

# 행정자치부

## 시정요구

제 목 강원도 감리용역업자 선정(SOQ, TP)관련 지침 제정 부적정

기 관 명 강원도

관 계 기 관 강원도 본청

내 용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에 따르면 발주청이 시행하는 용역사업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사업비가 고시금액<sup>81)</sup> 이상인 용역사업은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르면 건설기술 용역을 발주할 때에는 참여자의 능력, 사업수행실적,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발주청이 정한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며,

특수교량(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트러스교 등)댐, 공항, 항만시설 중 5만톤급 이상 말뚝구조, 20만톤급 이상 원유부이식 계류시설, 배수갑문, 하저터널 등 토목공사, 플랜트 공사, 발주청이 기술 또는 공업의 신규성, 공사수행의 난이도 등을 검토하여 인정한 건설기술용역은 규모별 적용 기준에 따라 기술자평가서 또는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게 하여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81) 기획재정부 장관 고시금액 : 2012. 3. 15.(2.5억 원)  
2013. 1. 30.(2.3억 원)

[표] 용역규모별 적용기준

구 분	용역비	기본계획/기본 설계/건축설계	실시설계	감리
용역 규모별 적용기준	25~5억	PQ		
	5~10억	PQ & SOQ	PQ	
	10~20억	PQ & TP		PQ & SOQ
	20~30억	PQ & TP		
	30억이상	PQ & TP		

한편, 구)국토해양부(이하 “국토교통부”라 한다.) 에서는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기술용역 물량 축소로 수주경쟁이 매우 심화되고 기술자평가 및 기술제안서의 공정성, 투명성과, 변별력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기술자평가·기술제안 평가 대상 축소, 제출도서 간소화, 설계비 보상 등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변별력 강화, 투명한 평가제도 마련 및 기술자평가 및 기술제안서평가는“금액기준”과 “난이도 기준” 모두 충족하는 사업을 평가하도록 하는 용역업자 선정 기준 및 절차인 「기술자평가서 및 기술제안서 평가매뉴얼<sup>82)</sup>」(이하 “평가매뉴얼”이라 한다.)을 대폭 개정 시행(기술기준과-1451, 2012. 7. 6. )하고

이어서 「설계용역 평가기준(PQ·SOQ·TP<sup>83)</sup>) 매뉴얼」을 개정 시행(기술기준과-83, 2013. 4. 4.)하여 적용하도록 하였고, 감리용역 및 건설사업관리의 평가방법 및 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은 본 평가매뉴얼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개정된 용역규모별 적용기준

구 분	현 행				변 경('13.4.1이후)				
	용역비	기본계획/기본 설계/건축설계	실시설계	감리	용역비	기본계획/기본 설계/건축설계	실시설계	감리	
용역 규모별 적용 기준	23~5억	PQ		PQ	23~10억	PQ			
	5~10억	PQ & SOQ	PQ		10~15억	PQ & SOQ	PQ		
	10~20억	PQ & SOQ		PQ & SOQ	15~20억	PQ & SOQ		PQ & SOQ	
	20~30억	PQ & TP		PQ & TP	20~25억	PQ & TP	PQ & SOQ		
	30억이상	PQ & TP		PQ & TP	25억이상	PQ & TP			

※ 2013. 4. 1. 이후 감리용역은 20억 이상용역에 대하여 PQ & SOQ 시행(TP는 폐지)

82) 감리용역, 건설사업관리의 평가방법 및 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은 본 평가매뉴얼을 준용할 수 있음.

83) PQ(Pre-Qualification)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사업수행능력 평가), SOQ(Statement of Qualification) : 기술자평가  
TP(Technical Proposal) : 기술제안서 평가

그런데, 강원도(○○○○과)에서는 감리용역업자 선정시 본 평가매뉴얼을 준용할 경우 시설물별 난이도 대상 시설물 적용시 설계의 난이도와 감리의 난이도는 달리 적용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하여 「강원도 감리용역 사업자 선정 시설물 난이도 지침」을 마련하여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강원도 본청 및 18개 시·군에 시행(○○○○과-00000, 2012. 00. 00.)함으로써

당초 입찰질서 확립, 기술자평가 및 기술제안서평가 축소하여 평가방식 간소화로 업계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국토부 평가매뉴얼 개정 취지와 상반되는 지침을 운영하고 있다.

[표] 기술자 평가(SOQ) 난이도 기준 비교(도로분야 예시)

구분	국토교통부(예시)	강원도
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장대교연장 500m 이상, 경간장 100m 이상 및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트러스교 등 특수교량</li> <li>② 일반터널(3km 이상 터널), 해저 또는 하저터널</li> <li>③ 도시부 장대지하도로(500m 이상)</li> <li>④ 통제센터와 연계된 통합시스템이 필요한 지능형교통체계시설</li> <li>⑤ 출입시설·안전입체교차 신설, 확장 개량 설계 용역 및 공용 중인 기존교량(경간장 100m 이상의 전면 개량 설계 용역</li> <li>⑥ 자연재해위험지구(산사태, 홍수 등, 환경보호·보전지역(국립공원, 수변구역, 백두대간 등)으로 지정된 지역 및 문화재, 천연기념물 서식지 등의 통과가 예상되는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장대교연장 500m 이상, 경간장 50m 이상 및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트러스교 등 특수교량</li> <li>② 일반터널(1km 이상), 해저 또는 하저터널 (3차선 이상의 터널포함)</li> <li>③ 통제센터와 연계된 통합시스템이 필요한 지능형교통체계 시설</li> <li>④ 나들목(IC) 신설, 확장 이전, 확장 개량 설계 및 공용 중인 기존교량의 전면 개량 공사</li> <li>⑤ 4차선 이상의 도로 확·포장공사가 5.0km 이상인 공사</li> <li>⑥ 폭6미터 이상으로서 연장500m 이상인 복개구조물 공사</li> <li>⑦ ~⑨ 자연재해위험지구(산사태, 홍수 등)로 지정된 지역의 통과가 예상되는 경우, 국립공원, 수변구역, 백두대간 등 환경 보호·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구역의 통과가 예상되는 경우</li> <li>⑩ 문화재, 천연기념물 서식지 등의 통과가 예상되는 경우</li> </ul>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르면 문서는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의 내용에 따라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 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위임전결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아울러, 「강원도 사무전결규칙」 제3조에 따르면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새로운 정책 결정 및 기본방침의 결정,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

요의사 결정,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대한 주요 결정 사항은 도지사 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실국의 주요 업무 및 기본계획의 설정, 일반 인·허가 사항에 대한 합법성 검토, 소속 과장에 대한 업무조정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은 실·국장 전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도정전반을 아우르는 기본방침을 결정하는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도지사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건설기술용역업체의 행위제한, 이권, 입찰, 계약 등에 영향을 미치는 「강원도 감리용역 사업자 선정 시설물 난이도 지침」을 제정하면서 도 본청 및 18개 시·군에 적용하는 중요한 기본방침 결정사항을 도지사 결재 없이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았다는 사유로 담당국장 결재 후 부적정하게 시행하였다.

그 결과, 2016. 4. 29. 강원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순환도로(○○~○○간) 도로개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sup>84)</sup>」는 국토교통부 평가매뉴얼상 난이도 기준(예시)을 적용할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만으로도 입찰참여자 선정이 가능하였는데도

「강원도 감리용역 사업자 선정 시설물 난이도 지침」을 적용하여 사업내용에 3차선 이상 터널이 있으나 심의위원들의 부정적인 입장이 있었음에도 원주시가 사업수행능력평가(PQ)와 기술자평가(SOQ)를 실시하여 입찰참여자를 선정하게 함으로써 국토교통부 평가매뉴얼 취지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 지침을 운영하여 관련 업계의 입찰부담 상승, 평가의 공정성 결여로 인한 의혹제기, 폐지 요구 민원발생 등의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다.

---

84) 사업개요 / 원주시 발주

- 사업량 : L=3.216km(주요시설물 : 교량 L=25m, 3차로터널 L=0.750m)

- 용역비 : 36억 원

**조치할 사항            강원도지사는**

국토교통부 “설계용역 평가기준 매뉴얼”을 확대하여 제정한 강원도 기술자평가 (SOQ) 난이도 기준을 재정비 등 보완하여 입찰참여 제한 관련 의혹제기 등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하시기 바랍니다.